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인 구조·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 제한 및 대피의 요건을 완화하고, 위험한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퇴거 및 접근 금지 근거를 마련함(안 제5조제1항제2호·제3호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